

의안번호	2209264
의 퇴 인	박정훈의원
회 답 일	2025. 4. 9.
추계번호	25C1947
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1항 (보존·관리구역 특례)	보존·관리구역에서 매장유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9조제1항 (토지등의 취득)	서울특별시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·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·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4조(사용 료 등의 감면)	지방자치단체는 보존·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보존·관리사업 및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,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제1항 (보존·관리구역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(토지등의 취득)	
3	안 제14조(사용 료 등의 감면)	

2. 상세사유

- (안 제8조제1항) 개정안에 따라 보존·관리구역에서 매장유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
 - 매장유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국가유산 발굴을 허가받은 자, 해당 공사의 시행자 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소규모 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－ 국가유산청은 소규모·긴급 문화유산 조사 지원을 위해 2025년 233억 7,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 -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존·관리 구역에서 행해질 매장유산 발굴 건수 및 지원 기준·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(안 제9조제1항) 개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청장이 보존·관리구역 내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
 - 정부와 서울시는 사유지 보상 등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해 1993년부터 2025년까지 1조 5,767억원을 투입하였고, 2026년부터 2032년까지 1조 82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

[표 1] 풍납토성 정비사업 사업비 투입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1993 ~ 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사업비 (국비)	9,474 (5,801)	1,119 (783)	1,053 (737)	1,000 (700)	1,575 (1,103)	1,546 (1,082)	15,767 (10,206)

자료: 국가유산청

[표 2] 풍납토성 정비사업 사업비 향후 투입계획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계
사업비 (국비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,546 (1,082)	10,822 (7,574)

자료: 국가유산청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로 매입할 토지의 규모·위치·토지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(안 제14조) 개정안에 따라 보존·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보존·관리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존·관리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공유재산 등의 종류 및 사용료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 및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